서울노동권익센터 제4회 정기토론회

달려온 3년, 걸어갈 3년 함께 말하다

중간지원조직과 광역노동허브 역할을 중심으로

일시 : 2017. 11. 22.(수) 14:00~16:3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안내

사회: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장)

구분	시간	주제	발표자
1부 발표	14:00~ 14:10	**여는 이야기**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달려온 3년	심재옥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14:10~ 14:38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기획협력 - 법률상담 - 정책연구 - 교육	고명우(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전문위원) 이혜수(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장) 이 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홍소영(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14:38~ 14:50	**휴식**	

사회 :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구분	시간	주제	발표자
2부 토론	14:50~ 15:10	**서울노동권익센터 당면과제 토론 1, 2**	주진우(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5:10~ 15:40	**사업별 당면과제 토론** - 기획협력 - 법률상담 - 교육	공군자(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미영(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성근제(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15:40~ 16:30	**질의응답 및 청중 토론**	

▷▷목 차◁◁

▸**발표 1: 여는 이야기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걸어온 3년 심재옥(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1*
▸**발표 2: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기획협력** 고명우(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전문위원)	*3*
▸**발표 3: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법률상담** 이혜수(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장)	*17*
▸**발표 4: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정책연구** 이 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31*
▸**발표 5: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교육** 홍소영(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41*
▸**참고자료 : 감정노동보호사업 실적 및 평가, 향후 방향** 이정훈(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장)	*51*
▸**토론문 1: 서울노동권익센터 당면과제 토론1** 주진우(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63*
▸**토론문 2: 서울노동권익센터 당면과제 토론2**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7*
▸**토론문 3: 사업별 당면과제 토론 - 기획협력** 공군자(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73*
▸**토론문 4: 사업별 당면과제 토론 - 법률상담** 김미영(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77*
▸**토론문 5: 사업별 당면과제 토론 - 교육** 성근제(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83*

발 표 문

[발표 1]

여는 이야기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달려온 3년 -

심재옥(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발표 2]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기획협력사업

고명우(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전문위원)

<목 차>

1. 사업개요

2. 사업설명

3. 사업평가_중간지원조직,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4. 2단계 기획협력사업의 방향성_중간지원조직,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Ⅰ. 기획협력사업 분야

1. 사업개요

○ **기획협력팀은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3년 연차별 중장기적 사업전략 단계(구축-강화-확산) 속에서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의 3가지 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 정책 연계사업을 진행해 옴**

<표 Ⅰ-1> 기획협력사업 구성

사업과목	사업명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사업	지역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노동권익증진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협력기관 정책협약
	노동분야 기관/단체 상시 네트워크
	센터 사업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
서울시 정책연계사업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2. 사업설명

1)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기반형성**

- 지역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여성,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에 밀착한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주체 발굴,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노동자 참여 생태계 조성

○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노동단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추진**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협력' 역할 부여. 2차 년도에 이어 노조와 단체

를 포괄하는 지역단위 노동네트워크 구축

○ 지역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권익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모사업 유형을 A형(지역네트워크형), B형(조사, 연구 등 의제개발형)으로 나누고, 2017년에는 A형을 단체 및 노조의 지역컨소시엄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치구 단위 네트워크를 촉진함.

<표 Ⅰ-2>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개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천원)	18,000	59,000	85,000
선정단체 수	7개	A형 6개 / B형 3개	A형 6개 / B형 4개
발전 과정	· 취약노동자, 주민모임 형성	· 지역노동네트워크 구성 · 계속사업 지원, 신규사업 공모 · 사업유형 세분화	· 지역노동사업단 구축 · A형 사업 연속심사
대표 추진사업	·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 · 청소년·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 도봉구 여성노동자 건강체조교실 · 알바 권리찾기 ABC · 여성 뷰티업계 근로실태조사 · 우리동네노동인권 지도 만들기	· 노동자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상담 · 돌봄노동자 스트레칭교실 · 돌봄노동자 밥상모임 · 노동인권학교 ·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편집디자인과 인문학의 만남	· 마을노동자 역사체험 나들이 · 노동존중 예술작품 공모사업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자 학교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 이주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동작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봉제노동자 커뮤니티 FGI 권익향상사업 · 대리운전기사 직무역량교육

2) 노동권익증진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 서울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노동센터와 전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함

○ 협력기관 정책협약

- 유관 공공기관과 지속적 협력사업 위한 업무협약 추진. 서울시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서울시 노동정책과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표 Ⅰ-3> 유관/협력 기관 MOU 체결 결과

	날짜	기관	협약내용
1	2015-04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 상호업무 협력체계를 구축
2	2015-04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역사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과 교육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상호 업무협력
3	2015-05	성북구	성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와의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4	2015-06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모성권 향상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 체계 구축
5	2015-09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노동자 마음건강과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6	2015-10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학생 노동인권인식 향상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7	2015-11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지역 중장년층 구직자의 노동인식 향상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8	2015-11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와 "직업건강"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
9	2015-12	서울시복지재단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10	2015-12	정릉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 전문강사 양성교육에 대한 상호 업무협력 체계 구축
11	2016-0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12	2016-03	한국공인노무사회	저임금,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과 사회권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13	2016-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복지'와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구축
14	2017-06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건설일용근로자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권리구제, 교육 및 정책연구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15	2017-09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지역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 보호와 노동권익 증진, 취약계층 구강 건강을 위해 공동 사업 추진

○ **노동분야 기관/단체 상시 네트워크**

-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취약노동자 권익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복지 의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노동조합·단체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취약노동자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표 Ⅰ-4> 노동분야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명칭	구성	비고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협력회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직장맘센터	16.9.회의정례화 (격월 1회)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서울지역 노동단체, 노동사업 정규 편성한 시민사회단체 (24개)	16.9.7. 회의정례화 (월 1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지자체지원 노동센터협의회)	전국 민간노동단체 및 지자체 지원 노동센터(32개) (전국의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한 노동센터의 협의회)	12.11.29. 회의정례화 (격월 1회)

○ **센터 사업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 취약노동자 대상, 의제별 노조-단체-유관기관 공동사업단 운영

<표 Ⅰ-5>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명칭	구성	비고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상담 네트워크	서울지역 노동조합, 노동단체, 고용복지센터 등 28개 기관/단체 (권리지킴이 협력사업장)	16.5
봉제노동자 권익향상 공동사업단	전국화섬노조, 전태일재단,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등 지역노동단체 (10개)	17.3 출범
2017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준비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서울지역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기관 및 시민사회단체(13개)	17.1 구성

3)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광역센터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보공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서울시·자치구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주요시책 이해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표 Ⅰ-6〉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 구성

명칭	구성	비고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강서구	17.1. 회의정례화 (월 1회)

- 월별 정기회의 : 매 월 셋째주 금요일
- 반기별 공동 워크숍 : 공동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4) 서울시 정책 연계사업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노동단체 등의 협력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일 경험을 통한 직업역량 향상과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 2016년 5월부터 20개월간 협력사업장 28개 기관·단체를 심사 선정하고 70여명의 권리지킴이를 모집·선발, 교육, 관리하고 있음.
-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노동센터(4개), 지역 노동단체(협력사업장 12개)
-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상담, 모바일상담 등 1,824건(2017.10.31.현재) 상담
-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며 조사결과는 사업장에 대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거리 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 진행 (2017.10.31.현재 138회)
-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노동교육: 2016년 뉴딜일자리 당사자 직무역량 강화와 노동전문성 향상에 주력, 2017년에는 비정규노동자 교육 등 영역 확대와 모델 개발.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당사자단체와의 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임. 2016년 3월 서초구(신논현)에 1호점, 2017년 2월 중구(장교)에 2호점을 개소하고, 2017년 11월 마포구(합정)에 3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금융, 법률, 주거, 건강 등 5개 전문기관협력을 통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Ⅰ-7〉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 상담 및 교육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금융 복지 상담 및 교육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주거 복지 상담 및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법률 지원 상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직 지원 상담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무 교실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 쉼터 정책의 파급효과로서 2016년 9월 서울시 『함께서울실천상』에 선정, 시책업무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선정(2017.10.4.)되는 등 중앙정부 근로복지정책 반영 및 지방정부 벤치마킹 사례 증가.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근로자의 근로대기 및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매칭 지원 검토(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글상자 Ⅰ-1〉 타지자체 이동노동자쉼터 벤치마킹 사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방문 (2016.9.28.)
•세종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방문 (2016.9.29.)
•수원시 교통정책과 쉼터운영자료 제공요청 (2016.10.19.)
•경기도 교통정책과 방문 (2016.12.18.)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방문 (2017.2.24.)
•부천비정규노동센터 방문 (2017.4.19.)
•안전보건공단 방문 (2017.6.16.)
•울산시 노사협력과 방문 (2017.9.15.)
•부산시 일자리창출과 방문 (2017.10.13.)
•울산시 구의원 합동방문 (2017.11.7.)

3. 사업평가_중간지원조직,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 인구 1천만 도시인 서울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만의 독자적 역량으로 취약계층 노동권익증진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동 관련 기관, 지역의 시민노동단체, 노동조합,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등 서울 전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을 연계함으로서 서울시 노동정책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노동권익분야의 허브로 기능하고자 한 한편, 사업의 직접수행이 불가능한

다양한 분야, 의제, 지역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민간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노동권익증진사업을 간접 추진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모습을 지향하였음.

1)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은 현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자치구 담당부서, 특수시책이 부족하며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등 주요 시책사업에도 노동 관련 사업이 매우 부족하여 자력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협력'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기반형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방과후 강사, 청소년 심야노동, 방문, 돌봄, 이주, 가사 등 서울노동권익세터가 미처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다루고 매 년 노동단체와의 거버넌스의 틀을 넓혀옴. 또한 이를 통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서울전역에 개별로 존재하던 노동단체들의 네트워킹 허브로서 위상을 정립함.

○ 그러나 지역기반구축사업 형태로서 공모사업 이외의 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참가 단위와 사업설계 취지 등이 공유되지 못해 여타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한 문제, 그리고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사업」의 기능과 성과를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가령 A형 사업의 경우, 공공의 지역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3년 연속지원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B형 단기 자유주제형 사업모델과 사업추진과 평가에 있어 차별화가 없음. 이러한 평가체계의 미비는 지역기반구축사업의 공정성과 공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며, 실질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가능한 데이터 축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역량축적 및 세대 간 교육에 활용되기도 어려움. 차후 사업 설계과정에서부터 대상 단위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설계를 추진하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 또한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확대와 맞물려 노동복지센터 또는 노동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노동사업 거점 확보를 위한 고민도 필요함. 이는 지역기반구축사업의 유일한 형태인 '공모사업'의 틀에 대한 고민과도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음.

2) 노동권익증진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 서울시에는 많은 노동관련 기관과 단체가 존재함. 이렇게 흩어져 있는 노동복지재원을 응집하고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갖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로서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의 취지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여러 가지 사업형태 중 하나로 협력기관 정책협약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현재로서는 당면과제 해결의 필요에 따른 흩어진 자원/기관의 기능론적 협약에 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설계가 필요함.

○ 서울시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공공의 재원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지역기반구축 및 노동권익 증진사업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단체들임.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가하는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구성,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협력회의 추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해 옴. 이는 지역노동단체들의 열악한 재원, 반노동인권적인 사회문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량, 여러 이론적 비판과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위들의 다양한 정치적 갈등관계 등등의 현실적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서울노동권익센터 3년의 중간지원조직사업의 네트워크 조직구성자체가 그 자체로 충분히 “부족하지만 충실한 실적”이 있었다고 봄.

○ 그러나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이라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현실정치지형 및 당면과제 속에서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구성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음. 그 결과 지역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잦은 공동사업은, 결국 참가단위의 역량소진과 네트워크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본래 목표한 성과는 점차 ‘계륵’이 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동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간지원조직을 추구하는 권익센터가 네트워크의 주요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발생함.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기반구축사업과 노동권익증진 민관협력공동사업 발굴 사업을 연계하여,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지역기반구축사업의 B형(단기 자유유형)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상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또 하나의 평가지점으로서 지난 3년간 지역노동시민단체, 노동관련 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여러 공동사업을 추진해왔으

나 여러 가지 외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 정당 및 양대노총, 당사자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킹이 상당히 미진했음. 노동권익증진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당 및 노동조합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이 차기 3년의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음.

3)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는 2016년부터 매월 1회 정기적인 사무국장단 회의, 매 반기별 공동교육 및 협력사업 논의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오며 사업기획/법률상담/정책연구/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옴. 그러나 민관위탁기관이라는 성격과 서울시-자치구의 위상 등 상호관계 설정에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어 실질적인 공동사업 추진보다는 상호간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체계 통일 등의 관계 맺기와 행정체계 호환에 그 기능이 맞추어져 있었음. 그러나 2017년 4개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8개로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에 달하는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가 존재하게 됨. 기존에 상징적으로 자리매김하던 서울시-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가 약소하나마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됨. 이에 따라, 애매모호하던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의 위상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차후 신규자치구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협의체 속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함.

4) 서울시 정책 연계사업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의 경우 노동권익 침해문제에 있어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뉴딜일자리 사업으로서 일-학습 병행을 통한 고용능력과 후속일자리 연계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추구하였고 그 결과 참여자 중 일부는 이미 해당 노조/단체에 고용이 승계되거나 기간만료 후 승계가 예정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던 반면 뉴딜일자리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관련 교육과 일 경험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등 관련 사업이 지체되고 성과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4개 자치구노동센터와 협력사업장 13개소와 함께 「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 노동상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별로 상담 접수와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부분의 협력사업장에서 공동사업(상담, 캠페인,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자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나름

의 성과를 내고 있어, 실효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가능성을 확인함.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사업의 경우, 쉼터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자존감, 동료와의 교류, 상담지원, 인문학산책 등 2017년 10월말 현재 복지프로그램 누적이용자 338명, 누적방문자 2만 6천명을 넘어설 정도로 특수고용 이동노동자의 독보적인 커뮤니티 공간, 문화복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러한 독보적인 플랫폼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구상과 달리 지자체는 쉼터 기능을 일차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원과 현실상황에 비추어 단순휴게기능의 쉼터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 등 당사자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동복지상담 프로그램의 기초모델로 삼을 수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 및 사업을 확대하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을 모색해야 함.

4. 2단계 기획협력사업의 방향성_중간지원조직,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1) 노동복지기반 구축

○ 노동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모델로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회를 통한 통합적 사업모델 구축을 들 수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4개 자치구노동복지센터로 이루어진 지난 1단계 3년의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회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보다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공통 구축 및 소통을 위한 정보의 공유의 네트워크 기능이 강했음. 2017년 하반기에 8개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차례로 신설되면서 기본적인 조건 변화 속에서 광역노동복지센터로서의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됨. 이러한 인식 하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통합적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노동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두 번째 기획으로 노동복지상담 사업을 들 수 있음. 이는 민간의 영역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반대로 이와 공공의 개별복지기관은 많으나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하기 때문에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복지에 접근하는 단체/기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복지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지역노동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강화방안이 있음. 지난 1단계 3년간의 기획협력팀의 지역기반구축사업 및 민관협력사업이 서

울 전역에 흩어진 노동시민단체/기관의 네트워크에 실질적으로 주력했다면, 차기 3년은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이 될 것임. 공모사업으로 표현되는 지역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의 기획설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임.

2) 노동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5개 자치구 중 8개에 불과하며, 지역별 노동사업의 거점 기반이 불안정한 자치구가 많음.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통해 계속하여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단위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별 노동사업 거점을 확보·강화할 예정임.

○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1단계 3년차의 거버넌스 사업이 네트워크의 구축에 방점이 있었다면, 2단계 거버넌스 사업의 초점은 노동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안정화 및 지원강화에 있음. 지역기반구축사업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네트워크의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임.

○ 자치구노동복지센터와 지역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 외에,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및 서울시 노동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또한 지난 3년간 관계 맺기에 머물러 있었음. 노동기관 및 서울시 위원회는 기반 안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수월한 조건임. 2단계 3년차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및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갈 예정임.

3)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기반 조성

○ 1단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업평가에 있어 부진 지점 중 하나는 취약노동계층,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추진이었음. 2단계 3년차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복지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 민관협력 공동사업 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취약노동 당사자 조직과의 사업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관 정책협약 등을 통해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촉진할 계획임.

[발표 3]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법률상담

이혜수(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장)

<목 차>

1. 법률사업 개요

2. 사업설명

3. 사업평가

4. 2단계 법률사업 방향

Ⅱ. 법률사업

1. 법률사업 개요

○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는 2014년 서울시와 계약당시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에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법률상담등 법률지원을 해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권익센터의 법률사업은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의 직접 지원사업 한 축과 이 사업을 실행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권익센터는 201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노동상담은 연간 2천여건 내외, 연간 100건 이상의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음. 상담사례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하였고, 권리구제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40명을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위촉하여 법률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표 Ⅱ-1> 법률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대상(이용자, 참여자)
직접 지원사업	상시노동상담	불특정
	권리구제지원사업	불특정(서울시민, 서울소재사업장 근무)
인프라구축/운영	노동상담DB 구축/운영	권익센터, 자치구센터, 옴부즈만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자치구센터
	상담자역량강화교육	권익센터·자치구센터 상담자, 노조·노동단체 활동가
	노동상담매뉴얼 제작	권익센터·자치구센터 상담자, 노조·노동단체 활동가
기타	상담사례집 제작	서울시, 권익센터, 자치구센터, 노조·노동단체

2. 사업설명

1) 노동상담

○ 권익센터 법률상담팀에는 설립초기 2명의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다가 예상보다 상담수요가 폭주하여 2016년부터는 3명이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음. 그리고 자치구 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상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해왔는데 권익센터의 지역공모사업 확대와 자치구센터 증설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표 Ⅱ-2> 상담실적

(단위: 건수)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10월31일)
상시상담	2,084	1,853	1,731
찾아가는노동상담	140	45	24

2) 권리구제지원사업

○ 권리구제지원사업은 노동상담을 한 내담자가 노동청이나 법원 등을 상대로 하는 법적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를 원하는 경우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정하고 수임료를 지원.

○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서울시가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 중 사업장소재지·내담자거주지·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익센터가 지정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은 내담자를 위하여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

○ 노동권리보호관은 사건의 시작(접수)와 종결을 권익센터에 보고하고 권익센터는 그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

○ 권익센터는 사건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포기, 합의, 대리인과 갈등)을 확인하고 조정하여 사건이 해결됨.

[그림 Ⅱ-1] 권리구제지원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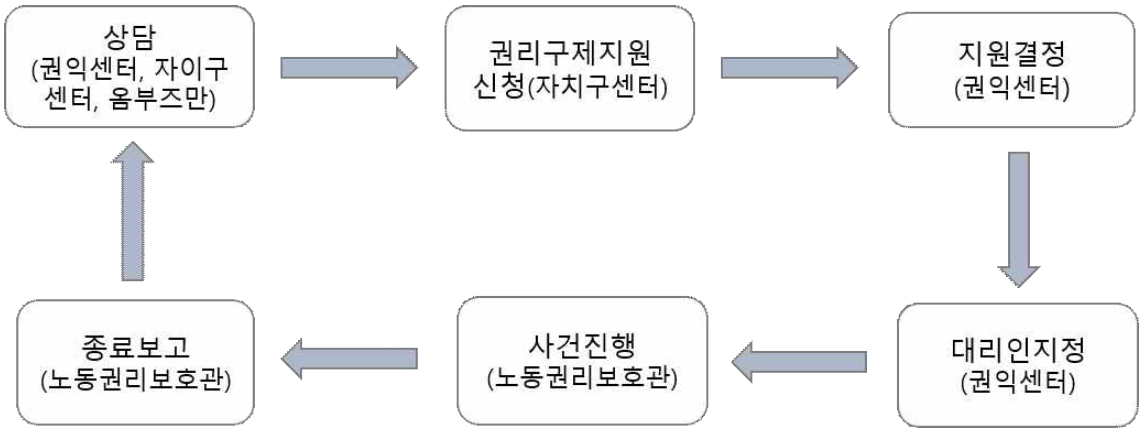

〈표 Ⅱ-3〉 권리구제지원기준 등

구분	지원자격		지원금(노동권리보호관 수당)
	공통	개별	
청구, 행정심판	-서울시민 or 서울소재사업장 -월평균250만원 이하	- 타당성 검토	50만원
소송		- 타당성, 승소 가능성, 제도개선성 검토	-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 경제적 이익에 따른 성공보수,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표 Ⅱ-4〉 권리구제지원건수

연도	2015	2016	2017(10월31일)
지원건수	20	121	140

3) 노동상담DB 운영

○ 상담DB는 개발단계부터 자치구센터와 서울시노동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서울시 노동상담사례를 통합관리할 것을 목표로 설계함. 특히 향후 늘어나는 자치구센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DB에 축적되는 정보는 시기별 실적, 교차통계가 가능하고 단체별로 분류가 가능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 실적보고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권익센터는 매년 초에 전년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그림 Ⅱ-2] 서울시 노동상담 DB(db.lab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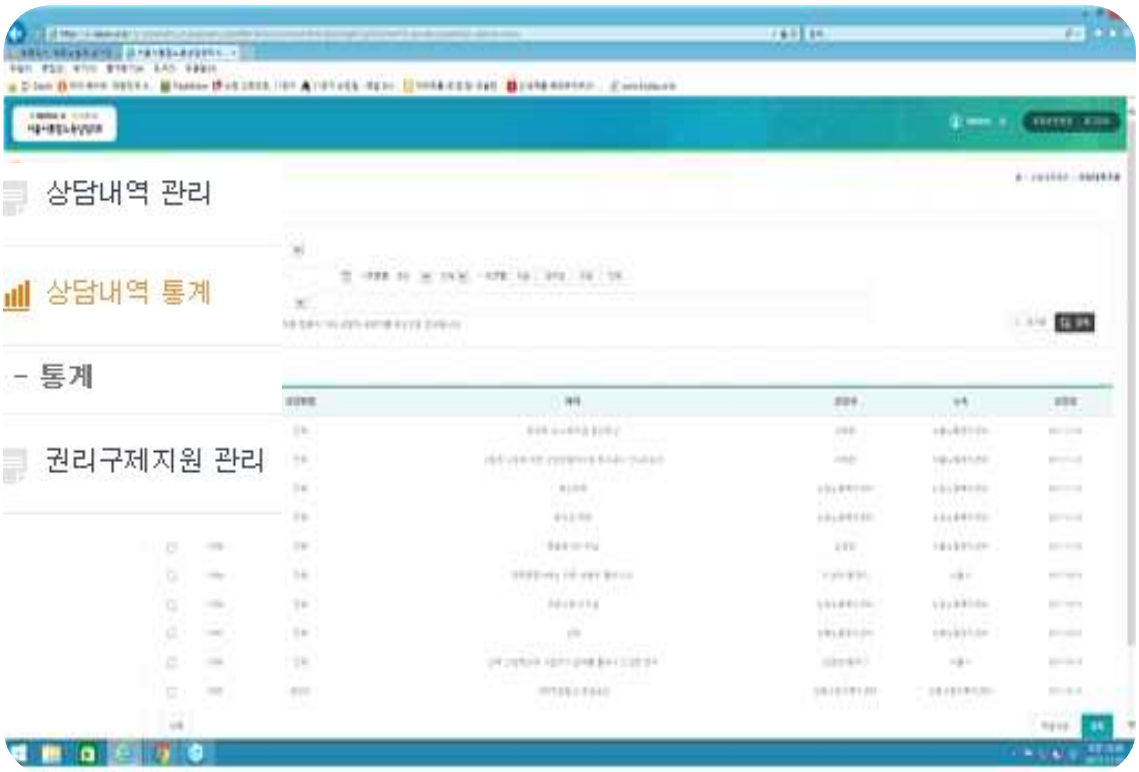

[그림 Ⅱ-3] 상담유형 통계 (db.lab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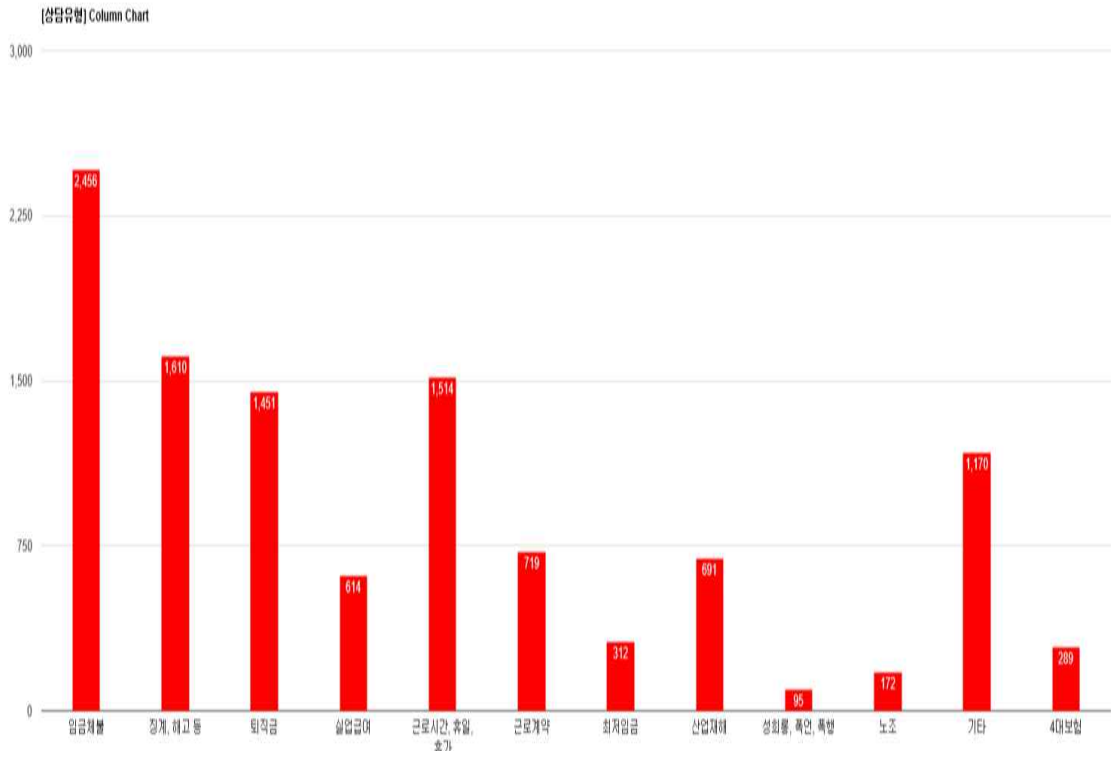

〈표 Ⅱ-5〉 노동상담DB 이용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10월31일)
이용단체 수	1	5	8
사례 수	2,184	6,744	8,792

*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25개자치구에 2명이 지정되어 총50명이지만 하나의 단체로 취급

3. 사업평가

○ 법률사업의 목적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로 상담과 법률구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이들은 주로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단순노무직이고 청년이나 중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어려움.

○ 한편, 권익센터는 사업대상인 취약노동자들의 집단을 특정할 수 없고 지역이나 다른 경계를 정해서 제한할 수도 없음. 즉, 직접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사업대상을 조직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는 사후관리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이미 내재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법률사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성공 또는 실패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사업목표달성을 어렵게 함.

○ 이런 조건에서 앞서 제시한 '양적인' 실적은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표임. 그러나 권익센터 조직과 인적 제약 속에서 상담 건수가 많다고 해도 지금 서울시에서 양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노동상담DB에 축적되는 상담사례는 2017년 1만건 정도가 예상됨. 이는 서울시민을 1천만으로 볼 때 불과 0.1%에 해당될 뿐이지만,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10만명 이상, 서울시민 1%가 서울시 노동상담을 받았다는 의미임. 즉,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의미 있는 양적인 성취가 가능해짐.

○ 법률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법률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상담이나 권리구제사업의 결과는 서비스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지 않다면 제도적인 한계, 증거의 미비, 당사자 특성등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법률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려움. 결과에 대한 만족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충족되는 것이라서 법률서비스의 질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권익센터를 찾아오는 취약노동자들은 다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음.

○ 요약하면 법률사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사후 조직이 어렵고 서울시 규모 상 의미 있는 양적인 성취를 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하고, 법률사업의 특수성에서 지원결과가 외적인 요인(제도적, 주체적, 사회적 제약)에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1) 지원대상과 지원결과

○ 법률사업은 노동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권익센터의 노동상담과 권리구제가 취약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해야 함.

○ 2015년과 2016년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60% 이상이었고, 2016년에는 상담DB 이용단체가 늘어나면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로 분산되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청년아르바이트 문제에 집중하면서 20대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중고령자의 주요 직종은 경비·미화·요양보호사 등이고 이는 단순노무·서비스직에 해당. 20대의 주요 직종은 카페나 식당 서빙·피시방이나 스터디카페·독서실 관리 등 서비스직인데, 20대 내담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직 내담자도 두 배 이상 증가함. 이들 직종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함.

〈표 Ⅱ-6〉 연령대별 상담비중(단위: %)

연령대 \ 연도	2015	2016
10대	0.9	0.7
20대	7.8	13.6
30대	14.2	21.7
40대	14.5	19.6
50대	29.5	24.3
60대	26.5	16.8
70대 이상	6.5	3.3
합계	100.0	100.0

〈표 Ⅱ-7〉 직종별 상담현황(단위:%)

직종 \ 연도	2015	2016
단순노무	38.9	28.3
서비스	9.4	19.7
사무직	8.9	12.5
전문가	8.6	10.2
기능직	13.4	9.5
장치·기계조작	11.3	7.1
판매직	5.3	6.9
관리자	4.0	5.8
농림·어업	0.1	-
합계	100.0	100

○ 내담자의 특성은 권리구제지원에서도 나타남. 권리구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권리구제지원현황을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음. 이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에 대한 지원의 비중도 절반에 이름. 이를 보았을 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 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표 Ⅱ-8〉 연령대별 권리구제지원신청자 (단위: 건)

신청기관 \ 연도	2016	2017	합계
10대	1	-	1
20대	21	42	63
30대	8	23	31
40대	10	13	23
50대	24	25	49
60대	35	22	57
70대 이상	22	15	37
합계	121	140	261

〈표 Ⅱ-9〉 주요 직종의 사건현황

	사건수	연령대	쟁점
경비·미화· 주차관리·요양보호사	89	50대 이상	최저임금, 연장수당
서빙·단순노무· 독서실총무	35	20대	주휴수당, 퇴직금, 연장수당, 최저임금

○ 권리구제지원의 결과를 보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합의되고 인정비율도 절반 정도임. 이를 보았을 때 비교적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법적 진정·구제신청·소송의 절차에서 법적판결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타당함. 그러나 내담자 다수가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권리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됨. 또한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다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체불임금 사건 중 합의를 한 건의 수령액을 보면 330만원 내외인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두 달분의 임금수준에 불과함. 체불임금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서 체불액이 크게 누적되지 않기 때문임.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액이기 때문에 권익센터와 같은 단체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률지식과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취약노동자지원이라는 법률사업의 목표는 권리구제지원 사업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Ⅱ-10〉 권리구제지원 결과 (단위: 건)

연도 / 처리결과	2016	2017	합계
불인정	15	4	19
인정	34	19	**53**
일부 인정	4	2	6
포기	8	8	16
합의	56	58	**114**
진행중	4	49	53
합계	121	140	261

〈표 Ⅱ-11〉 평균 체불임금 수령액

연도 / 신청기관	2016	2017
사건수	56	55
수령액 평균	3,241,800	3,343,335

2) 중간지원조직

○ 노동권익센터는 광역자치단체 허브기능 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을 요구받고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법률사업도 이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지역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노동단체의 노동상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지역기반구축사업이 지역공모사업으로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었고 5개 자치구센터가 신설되면서 필요성이 감소하였음.

○ 사업의 수행방식, 즉 사업실행시스템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권익센터는 서울시의 노동법률지원 사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노동상담 DB는 개발을 할 때부터 권익센터와 자치구센터와 옴부즈만의 상담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함.
- 당시 자치구센터는 각자 프로그램으로 상담실적을 정리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였고, 25개 자치구 25명의 옴부즈만은 수기로 작성한 상담일지를 서울시에 제

출해서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하였음.

- 서울시 전역에서 노동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체의 상담실적과 사례관리,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노동상담 DB는 권익센터 설립 직후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이용했고, 2016년부터 자치구센터와 서울시 옴부즈만의 상담사례도 관리되기 시작함. 이로써 서울시의 노동상담이 모두 축적되고 관리될 수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도 실적관리를 할 때 투명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사업실행 시스템의 측면에서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 현재 권리구제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센터와 옴부즈만이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권익센터에 지원신청을 하여 권익센터가 지원승인을 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흐름. 즉, 권리구제지원은 권익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음.
- 지난 3년간 경향을 보면 노동상담의 약 1.5% 정도가 권리구제지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담자는 해당 자치구에 특정되지 않음. 또한 사건을 담당할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 집단도 자치구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려움. 이런 이유로 권익센터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 특히 권익센터는 자치구센터와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하고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관리하여 권리구제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표 Ⅱ-12〉 기관별 노동상담현황

연도 / 신청기관	2016	2017
A	401	551
B	2,090	1,652
C	796	847
D	1,811	1,762
E	1,646	2,782
F	-	900
G	-	306
H	-	4
합계	6,744	8,804

〈표 Ⅱ-13〉 기관별 권리구제지원실적

연도 / 신청기관	2016	2017
A	8	9
B	30	51
C	-	5
D	68	67
E	3	2
F	12	6
합계	121	140

4. 2단계 법률사업 방향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의 확산을 위한 공공법률지원 사업단 구성

-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었고, 2018년에는 자치구센터가 9개로 증가하여 촘촘한 노동상담체계가 갖추어졌음. 그리고 기존 센터들의 활동이 누적되면서 법률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더 많은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법률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률사업은 상담과 권리구제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법률사업은 현재 수준에서 나아가 사적조정과 직접 권리구제지원,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컨설팅으로 확장되어 예방적 권리보호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법률상담팀은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노동법률지원사업단(가칭)'으로 재편해야 함.

○ 중앙정부 노동행정과 협력 관계 구축

- 현재 법률사업은 제도권 밖의 취약노동자에게 사후적 법률구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방적 차원의 사업은 거의 없었고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하지는 않았음. 근로감독행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예방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동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법률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 노동법과 노동법 이외의 쟁점들(4대 보험, 각종 복지제도)을 이해하여 내담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법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담은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담자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법률사업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높여야 함.

○ 법률사업에서 드러난 이슈를 제도개선을 위해 의제화

- 연간 1만 건 정도의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사건을 통해 노동권 침해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쟁점을 의제화 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설계를 하고, 정책연구·캠페인·조례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발표 4]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정책연구

이 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팀장)

<목 차>

1. 1단계 정책연구사업의 개요

2. 1단계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3. 2단계 정책연구사업의 방향성

Ⅲ. 정책연구사업 분야

1. 1단계 정책연구사업의 개요

○ 현안/기반 위주의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미래의제/전략 연구과제의 병행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등 주요 서울시 현안/기본 과제 관련 연구사업은 계속 진행
-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해마다 미래/전략과제를 선정/발굴(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심야노동 종사자 노동실태,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서울시 여성비정규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하여 현안/기본과제와 병행하여 연구 수행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한 전략과제 선정과 현장연계형 사업 발굴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해 사업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전략대상과 의제를 선정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함.
- 전략대상과 의제 선정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 브랜드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서울시 노동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연구 영역의 확대와 지속적인 성과 축적을 위한 연구 수행으로 광역허브 센터로서의 정책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미래의제/전략과제 연구의 강화, 현안/기본과제 연구의 영역/범주 확대, 연구주제의 연속성을 통한 전년도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축적을 추진
- 이를 통한 광역허브 센터로서의 정책연구의 기능과 역할, 역량을 강화

<표 Ⅲ-1> 2015~2017년 정책연구팀 사업 실적

구 분		2015년 연구과제	2016년 연구과제	2017년 연구과제
미래/전략 과제	미래의제/전략 관련 연구 강화	-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노동실태, 쉼터 수요 및 방향성)(서울시 요청)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서울시 요청) - 심야노동 종사자 노동 및 건강 실태조사(서울시 요청)	-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서울시 요청) - 서울시 여성비정규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서울시 요청)
현안/기반 과제	취약계층 노동자 조사범위와 대상 확대 전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과 축적	-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연구 - 민간유통 감정노동 실태조사 -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 비정규직 자발적 보호기제 현황과 정책과제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취약계층과 불안정노동 개념정의, 음식업, 케이블방송) - 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서울지역 마을버스/셔틀버스기사 노동실태조사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서울지역 택시기사 노동실태조사 - 금융부문 감정노동 실태조사 - 성북지역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와 노동정책 연구 -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 서울시 투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 실태조사(서울시 요청, 비예산)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서울지역 택배기사 노동실태조사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서울지역 배달기사 실태조사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의 역할과 거버넌스 연구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청장년 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서울시 요청)
기타 정책 연구		- 동향분석 2종(서울노동, 고용형태공시자료 분석) - 이슈페이퍼 6종(감정노동, 청년실업, 중고령 여성봉제산업 노동자, 이동노동자쉼터, 표준고용관계, 제도와 불안정고용) - 노동권익포럼 4회(노동시장, 간접고용,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규모) - 정기토론회 2회(청년실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정책전문위원회 회의 2회	- 동향분석 1종(서울의 노동과 고용형태공시자료) - 이슈페이퍼 3종(미국노동자센터, 택시협동조합, 마을/셔틀버스) - 노동권익포럼 3회(산업안전, 여성노동불평등, 실업계 공업고 실습실 노동건강안전) - 정기토론회 1회(노동센터의 역할, 공개좌담회) - 정책전문위원회 1회	- 동향분석 1종(서울의 노동과 고용형태공시자료) - 이슈페이퍼 3종(디지털기술과 노동, 택배기사, 여성노동통계) - 노동권익포럼 4회(이해대변 다양성,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 노동복지상담, 미정[12월 예정]) - 정기토론회 1회(노동권익센터 1단계 평가와 2단계 계획) - 정책전문위원회 1회(11월말 또는 12월 예정)

2. 1단계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1)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정책수요 발굴

- 정책연구사업들은 지금까지 잘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2) 정책연구와 센터 사업의 결합 모색

- 봉제산업 연구 → 홍보포스터와 건강안전교실, 봉제사업단
- 감정노동 연구 → 경향신문 기획
- 지역노동기반 구축 공모사업 → 실업계 공업고등학교 실습실 노동안전보건 포럼
- 상담 내용에 기반한 연구사업 선정 → 마을버스, 최저임금 휴게시간

3) 정책연구 사업성과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취약계층 노동권익보호에 기여

- 서울시 노동정책의 집행에 있어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거나 이해당사자 간 조정, 민관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 지역 네트워크 등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함

○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연구(2015년) → 이동노동자쉼터 조성(2016년)

- 이동노동 종사자(대리기사, 퀵기사) 일자리의 질, 노동조건, 근무환경 개선과 쉼터 조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이동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리기사를 위한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하는 데 기초가 됨.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당사자 단체와의 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임. 2016년 3월 서초구에 1호점, 2017년 2월 중구에 2호점을 개소하고 금융, 법률, 주거, 건강 등 5개 전문기관협력을 통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근로감독 등 제한된 여건과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방정부와 노동센터가 협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전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이용만족도가 높아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조사(2015년) → 감정노동보호 조례(2016년), 감정노동보호 종합계획(2016년), 감정노동보호센터 추진(2017년)

- 본 센터는 서울형 산업인 서비스 부문에서 급증하고 있는 감정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함(2015년 공공부문과 유통부문, 2016년 금융비정규직, 2017년 보건의료).
- 2015년 연구는 서울시와 민간위탁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사례로 언론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감정노동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고 시민들이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연구 초기 기획, 면접조사, 연구성과의 홍보 등에서 서울시(노동정책과)와의 사전 협력으로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제고하는 데 있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음.
- 2015년에 진행된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조사의 정책대안(사업자용, 근로자용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배포, 위원회 설치와 운영, (가칭) 서울공감(公感)센터 설치와 역할)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16.1.7. 제정)'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16. 11. 8.)'에 반영되고, 조례와 종합계획에 따라'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설치를 추진 중임.
- 본 센터는 2017년 3월 현재 감정노동보호팀을 신설, 운영하고,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설치(18년 상반기)를 위해 인큐베이팅 업무 진행중임.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 설치 정책의 파급효과로서 중앙정부 제4차 근로복지기본계획에 정책이 반영되고 지방정부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연구(2015년) → 봉제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2017년)

- 서울의 도심형 4대 제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2015년 3월~7월)하고, 연구보고서의 정책대안을 교육홍보팀, 기획협력팀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후속사업을 개발함.
- 봉제산업 종사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용 동영상 및 스트레칭 포스터(2종, 6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정책연구 성과를 홍보캠페인으로 연계하고,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에 협력하고 있음.
- 봉제산업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로 봉제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장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으로 보고되어 봉제사업단 사업 추진 및 확대 예정임.

※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연구사업

- 심야노동 종사자, 서울시 여성비정규노동자 지원, 노동정책 평가체계 활용, 서울시와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간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 등

4) 지역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 부족

-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정부 공식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확한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즉, 전략대상에 대한 현안과 실태 중심의 연구와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전략의제로 삼을 수 있는 연구과 세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음.
- 또한 '서울'과 '지역'이라는 키워드와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한 분석이 부족하였음. 지역공동체에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분석의 중심에 놓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음.

5) 종합적인 중기 연구플랜과 체계적인 정책연구 대상 발굴 미흡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성격의 중기 연구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단계 사업 신청 시 3년차 연구 플랜을 작성, 제출한 바 있으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는 특히 정책연구사업의 연구주제와 대상의 선정에서 나타났음. 서울의 노동정책과 중기 연구플랜의 전망과 정책연구 결과가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주제와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3. 2단계 정책연구사업의 방향성

1) 정책연구사업의 전문성 강화

○ 서울연구원, 민간연구단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정책연구분야 협력 체제 구축/강화

- 현재 3인의 센터 정책연구인력으로 서울지역의 노동관련 연구를 포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외부의 노동 연구자 및 전문가와의 안정적인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노동연구는 다학문분과적 성격이 강해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임. 현행 노동권익센터 연구인력 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연구자의 도움을 받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공공 연구기관이자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 분야 기초 통계 자료 생산 필요(서울서베이, 노동청 자료 활용)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충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확대, 노동권익센터의 광역단위 노동허브와 중간지원조직 기능의 강화,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노동 관련 연구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확충이 필요
- 서울의 노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나마 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연구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지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구와 센터 사업 간 연계 강화

- 과학자(scientist) 대 공학자(engineer), 공학자로서의 역할(하늘을 나는 원리인 양력을 비행기라는 발명품에 적용한 라이트 형제)
- 정책과 사업 간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

2) 중간지원조직과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정책연구 분야의 민관협치 모델 구축

- 서울시-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 간 정책연구 사업 관련 역할을 정비하고 (정책)거버넌스 모델 구축
- 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유관기관 간 공동연구 사업의 확대
- 노동권익센터가 각 지역 노동단체와 서울시 간에 노동허브 역할을 통해 현장밀착형 서울시 노동정책이 되는데 기여

○ 서울시 노동정책 연구 관련 아카이브 구축

- 노동관련 정보, 지방/지역 수준 노동정책 사례, 연구보고서 등 정책자료의 수집 및 공유

○ 자치구 노동행정 체제 확립 지원

- 자치구 단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노동행정의 수요와 필요 요소의 확인?

3)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Survey your Community!)와 중기 연구플랜 마련

○ 노동과 지역을 연결한 세밀한 분석을 기초에 충실하기

- 노동과 일상, 노동과 문화가 지역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미조

직, 불안정,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과 일자리,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지역공동체와 연결지어 세밀한 경제적, 정치적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차원의 정책대응을 높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와 자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부터 충실히 해야 함.
- 노동권익센터가 포괄해야 할 지역, 노동자, 부문은 다양하기 때문에 범위와 초점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을 구성한 요소와 자원들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센터의 지리적 초점(시 전체, 시의 부문, 어느 지역의 노동자?)은 무엇인지, 센터의 주요 정책대상(모든 취약계층노동자, 저임금노동자, 특정 취약계층 집단, 어떤 특정 직종과 업종의 종사자?)은 누구인지, 정책대상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리더십은? 지역의 자원(조직[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노조, 연구소 등)은 충분한지? 등등에 답하는 것은 연구와 프르그램을 기획 및 계획하고 지역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서울지역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중기 연구플랜 작성과 체계적인 연구대상 선정·확대

- 1단계에서도 3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통해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한 것은 아님
- 당시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업화와 연계라는 고민 속에서 정책연구 사업의 주제와 대상을 정하기는 하였지만, 서울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지점과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울의 노동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계획 수립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3년 동안 정책연구조사 결과가 쌓이면 자연스레 지도가 어느 정도 그려질 것이라 생각했던 거 같음. 2단계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척도와 기호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의 사용목적과 쓰임새도 생각하는 계획 마련이 필요

4) 연구성과의 종합: 정책백서

○ 1단계(3년)와 2단계(3년)의 갈무리로서 노동정책백서 발간

[발표 5]

사업별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교육

홍소영(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목 차>

1. 교육사업개요

2. 세부 사업소개

3. 사업평가와 이후 사업방향

Ⅳ. 교육사업 분야

1. 교육사업개요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과 광역노동복지서비스 제공, 취약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한 노동허브역할을 지향하는 기관임.

○ 권익센터는 ① 광범위한 취약노동자를 위한 기초노동교육 과정과 전략대상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기획·개발하고, ②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③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확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옴.

○ 권익센터의 주요 사업은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 교육, 서울노동아카데미로 구성돼 2015년 1월 사업 시작 이후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며 2017년 10월 현재 약 11만 2천 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400여 명의 노동교육 강사를 확보함. 그리고 교재 3종, 교안 분석보고서 1종, 노동교육영상 10편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음.

<표 Ⅳ-1> 주요 교육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노동교육인프라구축	- 노동교육 강사단 구성과 운영 - 교재 등 컨텐츠 기획과 제작 -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 기획과 운영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협력사업 :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협력사업 - 기획사업 :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 대상 노동 교육 기획과 운영, 관련 네트워크 형성
취약계층노동권익교육	- 협력사업 : 지역 교육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 (시민노동법률학교, 직종별 노동교육 등) - 기획사업 : 전략대상 발굴을 통한 기획교육 개발과 운영
서울노동아카데미	- 2016년 서울시에서 권익센터로 이관 - 서울 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노동교육 강사지원을 요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 교육 진행 - 교육 홍보, 신청접수, 강사매칭과 운영, 교육결과 관리 등

2. 세부 사업소개

1) 노동교육인프라 구축

○ 강사단 구성과 운영

- 2015년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노동교육 강사단 구성. 2016년 서울시가 주관하던 서울노동아카데미 사업이 이관되면서 서울시가 노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서울노동아카데미 강사풀 확보.
- 2015년 하반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로 지역별로 강사단을 양성해 2017년 현재 약 122명의 강사 확보. 2017년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네트워크(이하 서청지넷)이 출범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청지넷과 협력관계를 맺고 강사 역량강화와 원활한 교육을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13명으로 사용자 노동교육 강사단을 구성하고 40여회의 노동교육을 진행함. 강사단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교육용 PPT와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교재 제작 중.

<표 Ⅳ-2> 강사단 구성 추이(중복등록가능)

연도	2015	2016	2017
서울노동권익센터	75	78	78
서울노동아카데미	-	293	284
사용자노동교육	-	12	12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87	122
계	75	419(중복 제외)	459(중복제외)

○ 교재, 교육영상 제작

- 어려운 노동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노동법률이야기'와 중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제작 배포했음. 현재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률교재를 제작 중임.
- 꼭 알아야 할 일터 상식 10가지를 옴니버스식로 구성한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터상식'을 제작해 SNS와 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학교와 관련 부서·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그림 Ⅳ-1] 교재 표지, 교육영상 이미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사용 사례 이미지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노동법률이야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마트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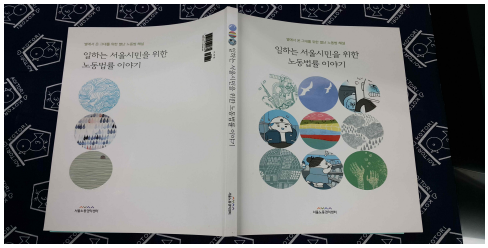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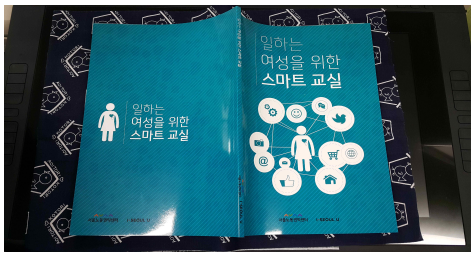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터상식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터상식 배포**

○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2017년 노동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상반기 '노동인문학: 땀·꿈·품', 하반기 '노동인문학: 서울노동 100년 역사'를 기획하고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시범교육을 진행함.

〈표 Ⅳ-3〉 노동인문학 강의별 목차

노동인문학: 노동의 땀·꿈·품(8강)	노동인문학: 서울노동 100년 역사(5강)
1강 노동과 나 : 왜 노동인문학인가? 2강 노동이란? : 노동과 인간 3강 노동의 역사 : 인간은 아직 진화 중? 4강 노동과 사회 : 천하대본을 찾아서 5강 노동 인권 : 사람답게 살자면? 6강 한국의 일자리, 현실과 대안 찾기 7강 망가진 한국경제의 비밀, 노동의 대안 8강 입사에서 퇴사까지, 일터에서 우리의 권리	1강 도시의 엔진은 노동 2강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서울노동 3강 60~80년대 근대화의 성장 엔진 4강 빌딩 숲에 밀려난 노동 5강 은폐된 노동, 등장하는 노동

2)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첫 노동을 앞두고 있거나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다회차 교육을 통해 노동존중 인식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운영함.

- 2015년 당시 80회 교육을 목표로 청소년노동인권활동 단체와 협력해 강사단을 구성하고 교육을 추진함. 2015년 10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표했던 80회 교육을 넘는 210여회의 교육을 진행함.
-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던 서울노동아카데미가 권익센터로 이관되면서 청소년노동교육을 두 개의 축으로 운영하게 됨. 1회차 기초과정은 서울노동아카데미에서, 2회차 이상 심화과정은 취약계층노동교육사업으로 분리해 진행함.
- 2017년에는 다회차 소규모 교육의 비율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함.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인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2차 심화교육 기획·운영사업과 청소년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시범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 및 2018년 교육대상(참여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과 취업지원센터에서 구성한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R&D 팀에 합류했으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2018년 사업협력을 위해 논의 중임.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서울지역네트워크(이하 서청지넷)와 강사 양성과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표 Ⅳ-4>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연차별 실적

연도	2015		2016		201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서울노동 아카데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서울노동 아카데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서울노동 아카데미
교육횟수	213	0	295	139	59	259
교육인원	8,000	0	8,255	23,265	1,247	21,471
총 교육횟수	213		434		318	
총 교육인원	8,000		31,520		22,718	

○ 취약계층노동권익교육

- 취약계층노동권익교육은 서울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동교육을 발굴·육성해 서울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강서, 양천, 강동, 성북, 은평, 영등포, 강북 총 7개 지역의 시민노동법률학교와 요양보호사, 대리운전종사자, 여성노동자, 중고령 재취업 훈련생, 서울 4개 기술교육원 훈련생 등 취약계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역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음.
- 2016년 서울노동아카데미가 서울시에서 센터로 이관되어 2017년부터 유사 중복사업은 서울노동아카데미로 사업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회차 심화과정인 경우 취약계층노동권익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음. 2017년에는 요양보호사,

대리운전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5회차 교육을 진행함.

<표 Ⅳ-5> 취약계층노동교육 연차별 실적

연도	2015	2016	2017
교육횟수	64	99	10
교육인원	918	2,747	280

3) 서울노동아카데미

○ 서울노동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교육사업으로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원하는 노동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임. 일정 인원 이상 노동교육을 하게 되면 자치구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수요 발굴을 독려함.

○ 서울노동아카데미는 보다 다양한 교육대상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음. 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노동교육이나 자치구청 공무원, 안전·위생관리교육 대상자, 민방위교육 대상자 등이 좋은 예임.

○ 교육 진행과정에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교육 인원과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5년 평균 213명, 2016년 평균 160명으로 교육 평균인원을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교육 선정과정에서 2시간 이상 교육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표 Ⅳ-6> 서울노동아카데미 연차별 교육실적

연도	2014	2015	2016	2017
교육횟수	144회	145회	314회	440회(예정)
교육인원	12,358명	30,856명	50,383명	41,523명(예정)

3. 사업평가와 이후 사업방향

○ 노동교육 확장의 발판, 서울노동아카데미

- 2015년 권익센터 교육사업의 방향은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교육사업을 협력·지원해 노동교육 확장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지역에서 노동교육 수요를 발굴해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음. 예를 들어, 건강안전교실사업은 교육일정, 교육대상을

수차례 변경했고 결국 초기 목표와는 다른 대상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음.

- 2016년 서울노동아카데미가 권익센터로 이관되면서 노동교육 대상 발굴 뿐 아니라 대상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물론 급작스러운 사업이관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좌우되는 것, 연간 교육 인원이 인센티브의 기준이라는 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서울노동아카데미사업이 노동교육의 안정화와 확장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그림 Ⅳ-2] 서울노동아카데미 사업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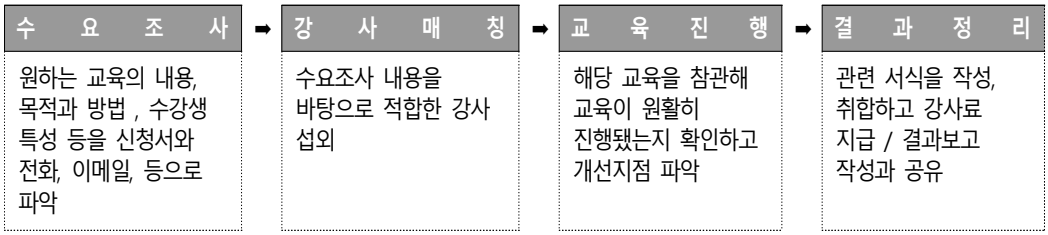

○ 서울지역 노동교육의 단계적 목표 수립

- 노동권익센터가 사업을 막 시작하던 2015년 당시, 이미 서울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음. 노동교육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 기관이나 단체의 지향에 따라 대상과 내용, 목적에 차이가 있었음. 권익센터는 다양성을 관통하는 지점에 주목해 서울지역 노동교육의 단계적 목표 수립이 필요함. 이는 노동교육을 받는 학습자, 진행자, 주최자 등 교육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노동교육의 원활한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교육의 주요 내용은 노동권을 둘러싼 물질적인 조건이나 법제적인 조건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태도 등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취약계층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권리인식 향상과 자기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학습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써의 노동교육

- 노동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권리침해는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와 권리의 충돌,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됨. 그 갈등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함. 노동교육의 목적은 노동이라는 범주 속 갈등관계를 힘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풀어나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라 생각함.

- 소규모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학습자의 경우, 조별토론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방식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함. 권익센터가 기획해 진행했던 노동인문학에 참여했던 학습자의 경우, 소규모·토론식·참여형 교육이라는 모집 안내문이 교육을 신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함.
- 해외에서는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을 비롯한 자유, 연대, 인권 등 주요 가치를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음.

○ 교육당사자 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역량강화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같은 컨텐츠라도 진행자에 따라 교육의 효과는 큰 차이가 남. 진행자의 발음이나 목소리, 몸짓부터 학습자에 대한 이해정도, 순간대응력, 강의내용 숙지 정도 등 강의진행자가 강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함.
- 노동교육의 목표와 내용, 형식이 정리됐다면 학습자가 질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강의진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현재 권익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400여명의 강사를 학습대상과 내용에 맞게 재편성하고 역량강화 과정을 설계해 강사-강사, 강사-학습자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협력체계 확대 강화로 서울노동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권익센터의 교육네트워크는 청소년노동을 중심으로 형성해 왔음. `15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다른 교육에 비해 수요 접근이 원활했고,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였음. 게다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잇단 사고 등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고 권익센터 역시 자연스럽게 흐름에 편승했음.
- 권익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만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설정한 노동교육의 목표에 맞게 협력관계를 넓혀가야 함. 청소년노동의 문제가 다양한 노동당사자의 갈등이 충돌하는 지점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 경험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권익센터는 다양한 노동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서울지역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참고자료]

감정노동보호사업 실적 및 평가, 향후 방향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장)

1. 주요 사업 실적 및 평가

2. 감정노동보호센터 사업 방향_중간지원조직과 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Ⅴ. 감정노동보호사업 분야

1. 주요 사업 실적 및 평가

○ 감정노동 보호 사업 : 2016년 1월 서울시 조례 제정 및 2016년 11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감정노동보호팀이 신설되어 향후 독립센터 출범을 위한 준비와 사업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한 수요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1) 일선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가. 주요 사업 실적

○ 일선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는 감정노동 실태조사, 감정노동 표준교안 제작 및 권리보장 교육,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 감정노동 간담회 및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감정노동 실태조사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4월 연구진 구성을 완료한 이래 설문/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 후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를 앞두고 있음.

○ 감정노동 표준교안 제작 및 권리보장교육 사업은,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한 자문단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및 예방·사후 치유방안 등을 포함한 감정노동 표준교안을 10월 말 제작 완료함. 이후 경력 10년 차 이상의 심리상담사, 연구자, 활동가를 섭외하여 총 15명의 강사단을 구성하고,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보장교육 신청/접수를 11월 중에 개시할 예정임.

○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 서울시설공단과 세종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하반기에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분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감정노동 간담회 및 포럼 사업은,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내 감정노동 보호제도 현황 및 개선점을 주제로 하여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향후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음. 감정노동 포럼은, 9월 27일 ‘감정노동자 자조모임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탐색’, 11월 3일 ‘사례를 통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하여 총 2회 개최함.

나. 사업 내용 평가

○ 감정노동 실태조사 사업은 종래 노동환경에 집중되었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실태조사와는 달리 감정노동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60%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고 90% 이상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보호제도의 마련과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 사업 착수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상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 내용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착에 사업이 중점이 있는 것이기에 대상 기관 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후반 작업이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상황임.

○ 감정노동 간담회 사업은 감정노동에 대한 의식 고취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확산·안착 등을 위함이었는데,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의 완료가 늦어진 점, 현재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목표한 바를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올해 하반기에 가이드라인 제작완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감정노동 포럼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사업, 감정노동자 직접 심리상담 사업을 주제로 하여 2차례 포럼을 개최하였음. 그 결과 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서 향후 포럼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2)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가. 주요 사업 실적

○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는 감정노동 상담 치유를 위한 공모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감정노동 상담 치유를 위한 공모사업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의 거점센터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7월부터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월 31일 현재 각 거점센터의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Ⅴ-1〉 감정노동 상담 치유 공모사업 실적

		공모 상담거점			
		서울동부감정노동네트워크	힐링메이트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마음과 성장
상담	접수(명)	28	45	60	16
	취소(명)	6	1	9	2
	종결(명)	1	32	26	5
	진행회수	81	141	111	85
치유프로그램	건수	11	7	0	4
	참석인원	68	115	0	66

○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권익센터 중심의 심리상담과 심리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5월부터 상담을 개시하였고 객원상담사를 19명 확보하여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0월 31일 현재 센터 및 객원상담사의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Ⅴ-2〉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센터 및 객원 상담 실적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수(명)	4	10	5	2	2	0		
취소(명)	1	2	1	0	0	0		
종결(명)	1	3	5	0	1	4		
진행회수	7	26	27	28	27	15		
객원상담사 진행 횟수	0	2	12	24	44	26		

○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은 지원조직 신청접수를 통해 총 25개 조직이 지원하였고 내부 심사를 통해 적정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종(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사회복지사, 콜센터 상담원 등)의 총 10개 자조조직을 선정함. 이후 6월 8일 오리엔테이션 및 모임촉진자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교육과 11월 중순 예정된 3차 간담회까지 포함하여 모임촉진자 간담회를 총 3회 개최하고, 총 6개 조직에 대하여 현재 10회차까지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각 모임별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음.

○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사업은 전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심리상담사를 모집하여 총 55명이 지원하였고, 상담 역량과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9명을 선발하여 7월 21일, 22일 2회에 걸쳐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함. 이후 8월부터

현재까지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받아 총 4개 집단(간접·특수고용 감정노동자)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감정노동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사업은, 감정노동 예방·보호 사업에 대한 한 해 사업 평가를 비롯해 감정노동에 대한 집단지성의 장, 친목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현재 1박 2일 합동 워크숍 형태로 기획하고, 해당 워크숍을 진행할 전문 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계획 중임.

나. 사업 내용 평가

○ 감정노동 상담 치유를 위한 공모사업과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궤를 같이 하는 사업임. '센터 직접 상담 - 거점센터 상담 - 객원상담사 연계'라는 삼각편대의 틀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무료라는 이점 때문에 수요가 몰려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거점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부담하거나 심리상담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객원상담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음. 또한 거점센터 역량의 차이로 치유 프로그램 참여 단위 조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몰리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인력이 소진되어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여력이 없었던 것도 미진한 점임. 다만 심리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감정의 소진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은, 지원조직 접수 시 역량 있는 모임촉진자(퍼실리테이터)와 기준에 적합한 자조조직의 높은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상 한계로 총 10개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함. 이에 내년에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많은 자조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그리고 모임촉진자 간담회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평가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모임촉진자로서의 퍼실리테이션 역할에 중점을 둔 역량 교육으로 준비하여, 간담회 참여율을 높이고 모임촉진자의 역량을 끌어올려 자조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사업은 8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했으나, 신청 집단이 총 4개로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단순한 공개/수동 홍보 방식 외에 정확한 수요 조사, 총 19개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자료 제작, 참여집단에 대한 직접/개별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

가. 주요 사업 실적

○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은 감정노동 CI 개발, 오프라인 감정노동 캠페인 및 감정노동 관련 카드뉴스 제작,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감정노동 CI 개발 사업은 감정노동 보호 상징 CI 및 CI 매뉴얼 북을 제작 완료했으며, 총 2회의 자문회의를 진행함. 6월~11월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캠페인에서 CI를 활용한 홍보물품을 적극 배포할 예정임.

○ 오프라인 감정노동 캠페인 사업은 6월~11월까지 월별 1회씩 총 6회 진행 계획으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기획 협력하여 감정노동 밀집 지역(감정노동 주요 사업장)에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함. 영등포역 광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마트 목동점 앞, 여의도역 앞, 여의도 국회 앞에서 캠페인을 총 5회 진행 완료했으며, 11월 23일에 성수역 앞에서 마지막 캠페인 진행 예정임.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감정노동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연대캠페인 사업을 추가하여 홍보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감정노동 관련 카드뉴스 제작 사업은 9월~11월까지 감정노동 관련 기획취재를 통한 월별 1회씩 편당 약 10매 분량으로 총 3편 제작 계획으로 페이스북,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카드뉴스를 배포함. 1편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2편은 감정노동 무료 심리상담 이었으며, 마지막 11월에는 자조모임을 주제로 기획 배포 예정임.

○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지침 완성 후 그림홍보물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작업 중임. UCC 공모사업 예산을 가이드라인 사업비로 전환하여 홍보 기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

나. 사업 내용 평가

○ 감정노동 CI 개발 사업은 감정노동 보호 상징을 CI에 담고 그 개념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안으로 진행함.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강화시켰음.

○ 오프라인 감정노동 캠페인 사업은 서울의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는 점, 직접 감정노동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감정노동 관련 카드뉴스 제작 사업은 2017년 감정노동보호팀의 주요 사업인 감정노동 실태조사, 무료 심리상담, 자조모임 지원 사업의 자료를 기반으로 총 3편의 카드뉴스를 진행하였음. 1편에서 다루었던 보건의료산업 이외의 다양한 감정노동 직군의 실태와 감정노동보호 사업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카드뉴스로 홍보되었으면 함.

○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 후 하반기 진행 되었으며,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감정노동을 이해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안내서 형식으로 배포함.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민대상 감정노동 UCC 공모사업은 홍보방안, 상금규모 등을 검토하였으나 독립센터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UCC 공모사업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함. 현재 사업 시기 및 공모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내년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 공식 출범 이후에 UCC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함.

2. 감정노동보호센터 사업 방향_중간지원조직과 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1) 전문가 풀 관리를 통한 인적허브기능(human-resource hub)강화

○ 감정노동보호 사업은 실태조사, 컨설팅, 심리상담, 권리보장 교육, 집단치유 프로그램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센터는 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영역(전문가 발굴), 각 분야에 대한 육성 체계 수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가와 현장을 연계해주는 시스템(현장 수요와 전문인력 매칭) 등을 갖추고 전담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정보허브기능(information hub) 강화

○ 심리상담 중앙 DB 구축을 통해 센터 - 거점센터 - 객원상담사로 연결되어 있는 심리상담의 전체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또한, 심리상담 사례 통합관리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정노동 분야에 적합한 심리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조직허브기능(org. hub) 강화

○ 감정노동 보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노조-시민단체-기업-정부/지자체 등)과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는 조직 간 연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단위를 벗어난 차원에서 감정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4)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1)]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 행정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임.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어주는 협치의 고리가 되어야 하고,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으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예산집행기준과 절차 등 행정중심의 운영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행정과 시민(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중간지원 조직이 행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자신의 성과나 행정의 성과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동원하여 이용한다는 인식을 받을 우려도 동시에 존재함.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구성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전문성 확보는 구성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포함하여 조직과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가능함).

○ 행정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자와 중간지원조직의 책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식회의기구(위원회)를 강화하여 행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해관계자는 행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공유하여야 함. 감정노동 사업의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 이 부분은 김지헌(2016)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희망이슈 5호, 희망제작소 발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함.

토 론 문

[토론문 1]

토론문

주진우(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1.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은 광역 차원에서의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현장중심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 8개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이들 노동권익기관들은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취약계층노동자의 종합노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취약 노동자 맞춤형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개설 이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및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단기간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교육, 기획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영역에서 노동권 보호 사업 기반 구축 및 실행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어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광역차원의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를 포함해 대내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2.

○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권익보호가 필요한 취약 노동자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전략적인 기획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전역의 취약노동자를 살펴볼 때 현재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집중해서 이를테

면 '노동법 지키기 서울캠페인' 같은 대범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노동법 지키기 서울캠페인'은 '임금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폭력 근절', '산업안전법 준수' 등의 주요 해결과제를 정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교육청,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함께 서울노동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서 해당 기업이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권익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서 주요 사안(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집단 소송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임. 발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법률지원 사업단'의 역할을 논의할 때 이 사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기업 내에서의 개별 노동자들은 노동권 침해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해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취약 노동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 밖에 있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노동권익기관들은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특성별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노동조합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 향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확대와 함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광역지원과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담됨.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현장밀착형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광역지원센터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지원조직으로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단순 법률 상담 기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권리구제는 노동권익센터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노동권익센터는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해서 권익을 개선할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광역 차원의 권익보호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광역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인적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체계인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과 마을노무사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와 협력하에 운영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노동권익보호관과 대상특화 기획사업을 지원하는 청년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는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리, 지원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 전략사업의 기획,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 인적지원체계의 개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확대 등은 서울시 노동행정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 특히 전략사업의 선정 및 진행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현장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노동행정의 역할이 필수적임.

○ 새로운 취약 노동자층(직장맘, 요양보호사, 마을버스·셔틀버스기사·택시기사, 청년 심야노동종사자 등)이 나타나면서 노동권익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복지의 제공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인 노동정책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와의 소통 채널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 내부에 노동행정 TF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조례상 기구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취약 노동자 권익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동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과의 협력,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5.

○ 업종, 고용형태, 세대별로 매우 다양한 취약 노동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서울의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의 마련, 단순 상담을 넘어서는 권리구제와 소송지원 및 권리 개선 캠페인 진행, 노동권에 대한 노동자·사용자·학교·시민 대상 교육 진행, 전 자치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대상별 노동권익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취약 노동자 권익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노동재단의 설립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전략 기획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 확대된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으로 공동권리구제사업 진행 및 집단 대응, 대시민 노동권 교육과 홍보, 노동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문 2]

지방정부로서 서울시 노동정책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과 시사점, 그리고 과제들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자료 단상

❍ 서울시 노동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처음' 혹은 '최초'라는 말을 하고 있음.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동정책은 국가차원의 노동정책(국가 사무)만 존재했을 뿐,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은 전무했었음. 그나마 지자체 노동정책은 '노사민정협의회'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집단적 노사관계 정도가 노동정책 정도로 볼 수 있음. 2011년부터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간 노동정책이라는 의미조차 제기 되지 못했던 곳에서 노동정책('노동존중특별시')을 형성했음. 특히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라는 보수정부 시기에,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노동정책(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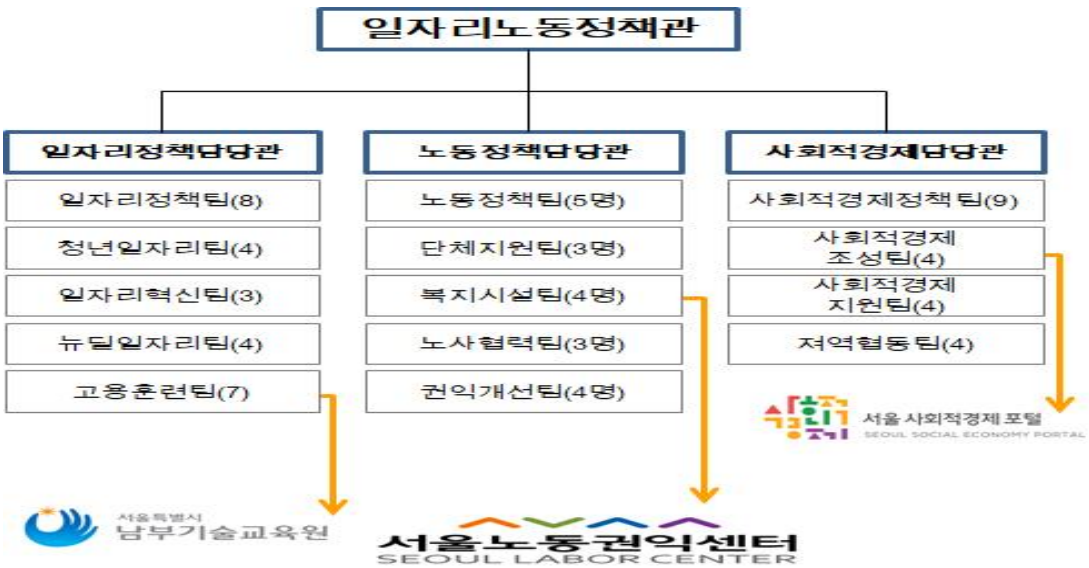

✓ 공공행정조직 및 지원조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단 이외에 청년정책관(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여성정책과(직장맘센터), 어르신(어르신둘봄종합센터) 각 부분별 지원센터

✓ 공공거버넌스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노사정모델협의회(서울모델협의회)

❍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 노동정책은 지방정부로서 조례 제정(rule setting), 행정조직(model employer)과 정책(기본계획, 종합계획), 평가와 모니터링(위원회,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노동권익센터)이라는 4가지 기본적인 틀을 모두 갖춘 것임. 우리나라 245개의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은 일자리정책, 산업경제,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의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고용이나 일자리 문제만을 다루었었음. 그러나 서울시는 '노동'이라는 영역을 독립적으로 모색한 지자체의 실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음.

❍ 2014년 첫 스타트를 시작한 노동권익센터의 실질적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3년이 된 상황임. 주요 사업은 센터 조직도와 발표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듯 △정책연구(11개 분야), △법률상담(상담 5,524건, 권리구제 206건), △기획홍보(공모사업 26건, 협력기관 15곳), △교육홍보(교육 965건, 이수 62,238명)로 되어 있고(* 이동노동자 쉼터 2개 운영, 감정노동은 2018년 별도의 독립 센터 분리되기 전 임시 조직 편재), 발표자료(ppt)에서 보면 주되게는 1)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2)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노동 네트워킹 구축으로 되어 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은 서울시 노동정책의 발전 과정(기본계획-종합계획)과 맞추어 사업 영역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 외 서울시 유관 정책과 사업(일자리정책과 아르바이트)에 간접적 영향을 받아 사업이 증가되기도 했음. 그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역할과 기능은 무엇보다 '구상과 실행'의 담지자 역할보다는 실행기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애초 서울시 노동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에서 구상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임. 센터가 정책 생산과 발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한 상황임.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3년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음.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취약계층 실태조사(이동노동자, 봉제노동자 등)를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한 것임. 또한 3년 간의 지속적인 노동교육(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통해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서울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사업은 그간 정부(고용노동부)와 민간기관(법률&노무법인)에 맡겨진 역할을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임.

□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람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향후 2기 사업 과제로 제시한 3대 목표(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노동존중도시 구축, 노동권익 증진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대)와 4대 주요 사업과제(①권익보호와 지원지지, ②노동복지기반 구축, ③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 기반 조성, ④노동역량/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이나 느낌을 기술함

❍ 무엇보다 노동권익센터 3대 목표의 '층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미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노동기본권 향상, 취약계층보호 지원, 각 자치구 센터 설립 등과 같은 비전을 제시한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센터 3대 목표에서 추상 수준이 가장 높은 노동존중 도시 구축이 다른 영역(문화, 인프라, 네트워킹)과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향후 2기 사업을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센터의 사업과 활동이 초기에 비해 외화 되거나 그 내용적 파급성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그간 정책연구나 실태조사 사업은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 파급성이 높은 반면, 일부 몇몇 사업(아르바이트)이나 교육홍보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효과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궁금함. 그 이유가 서울시와의 협의(커뮤니케이션) 문제인지, 내부 담당 부서 인력부족 문제인지, 사업 주체와 외부 단체/기관과의 진행과정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음.

❍ 첫째, 노동권익센터의 4대 주요 사업 과제 각 사업별 내용의 중첩성과 효과성 차원의 일부 운영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조사]

- 2018년 여성돌봄노동 보호와 돌봄서비스 사회화 연구가 권익보호 영역에서 '각인'되어 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현재 서울시 유관 기관과 센터(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어르신돌봄종합지원, 향후 '사회서비스공단')에는 일정하게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연구의 중첩성이 제기됨.

- 국제노동기구(ILO, 2006)에서 제기한바 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비표준화된 고용 성격이 강한, '모호한 고용 관계'(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labor needing protection)을 지속적으로 연구조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특정 부문이 아닌 산업업종이나 직종의 '포괄성'이 높고, 정책적 개입의 긴박함과 시급성이 높은 영역이기도 함. 현재 돌봄 영역은 정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새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센터 사업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차원의 노동정책 의제를 선도하고 알리는 '이슈 페이퍼' 발간 강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안함.

❍ 둘째, 노동권익센터의 4대 주요 사업 과제 각 사업별 내용의 중첩성과 효과성 차원의 일부 운영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복지기반]

- 2018년 노동복지상담 시범사업과 기반구축이 주요 사업에 있으나, '노동복지'라는 것이 불분명하게 진행될 경우 자칫 기존 복지정책 사업과 중첩성(서울시 금융상담 복지센터)이 제기 될 수 있음. 통상 노동복지는 '국가-산업-기업복지' 3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취약계층은 국가(중앙/지방) 제공의 낮은 복지에 기댈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 기반 구축과 상담은 지방정부라는 기존 서울시의 노동복지 사업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서울시 정책과 연동하여 진행할 것인가가 같이 논의되고 진행/모색되어야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이 있음. 더불어 만약 노동복지 상담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존의 노동상담 영역과 어떤 차별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정책,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지도 검토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정부의 두리누리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형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 설계(서울시 노동정책과)와 연동하여 해당 사업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와 유사한 제도/정책을 사전-사후적으로 이행관리 구축 등의 사업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음.

❍ 셋째, 노동권익센터의 4대 주요 사업 과제 각 사업별 내용의 중첩성과 효과성 차원의 일부 운영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교육 모듈화]

- 2018년 노동교육의 모듈화(서울노동아카데미)가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내부 평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센터 노동교육의 목표와 시스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 센터 노동교육은 크게 △청소년 교육, △아카데미(시민, 단체, 기관 등)로 구분되는 듯함.

- 그렇다면 센터 노동교육은 그 방향과 목표 설정(사업 평가)이 검토 된 이후 교육 영역 대상과 영역(노동자: 예비, 조직, 미조직 / 사용자 : 중소영세, 개별, 협회, 시민 : 인구학적 속성 등)을 설정하고, 그 대상에 맞는 시스템(목표, 방법, 교안, 강사 등)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센터 교육사업은 기존 3년의 평가 속에 안정화 제도화함께 양적 사업에서 질적 사업으로, 협소한 대상에서 중범위 대상으로 도약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음. 특히 교육사업은 담당자의 의지와 지역사회 네트워킹(교육청, 기관, 조직)이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잦은 담당자 변경과 교체, 교육 의뢰와 강사의 개인 역량별 편차 등으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궁금함.

❍ 넷째, 노동권익센터의 4대 주요 사업 과제 각 사업별 내용의 중첩성과 효과성 차원의 일부 운영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치구협력, 노조 단체역량 강화]

- 2018년 주요 사업 영역 중 자치구 각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노동권익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판단됨. 현재 서울시 노동복지센터가 2017년 상반기 4곳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센터의 활동이 협소하고 자치구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자율성, 독자성, 특성별 사업 필요성 존재하나).

- 앞으로 자치구 센터가 추가로 설립 확대 될 것이라면, 노동권익센터 주요 역량은 정책연구와 네트워킹이 초점이 될 것임. 이는 지역밀착형 사업은 자치구 센터에서 담당하고 권역 혹은 지역을 초월하는 사업을 센터에서 맞고,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콘트럴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실태조사 또한 개별 센터 사업도 있으나, 서울시가 핵심적/연차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조사는 노동권익센터와 지역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함. 동일 유사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데이터 구축이나 자료 비교도 안 되는 것은 비효율적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노조 역량강화 교육은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사업장의 노조나 취약층의 이해대변 단체/조직 등에 그 지원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 대규모 유노조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유노조 사업장은 센터 지원의 우선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2)]

–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울지역/각 자치구 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사업을 자치구(現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사회적경제과)와 연결하여 자치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장, 순수 민간영세사업장 등으로 연차별/영역별 대상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2) 센터 그간의 실태조사 중 산별노조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다소 의구심이 듦. 자원과 역량이 가능한 양대 노총 산하 조직의 사업보다 더 취약한 업종/직종 등이 많음.

[토론문 3]

기획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

공군자(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구심력과 원심력 사이의 애매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6개구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A형 지역기반구축사업과 봉제사업단 같은 서울시의 산업기반의 특징을 살리는 형태의 B형 노동권익증진 지역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A형 지역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각 자치구별 특성과 민간단체의 역량에 맞게 차근차근 지역별 네트워크구축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광범위한 서울에서 역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민간단체들은 자치구별 사업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지역기반구축이 강화될수록 원심력이 작동하여 더욱 더 자치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서울시 노동정책의 변화, 단일한 업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구성과 구심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은 일정한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다.

민간단체별 역량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네트워킹 허브 역할만 할 것인지, 일정한 구심력으로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광역노동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센터 위상정립 필요하다.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가 확산되면서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나,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은 불명확하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의 총괄센터로서 명확한 위상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애매한 위치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에서 명확히 위상정립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 간 긴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관과의 협력기관인가 집행체계인가!

민간단체와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중간지원조직, 허브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좋은 노동정책은 민간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거꾸로 민간단체 등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시에 제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은 동등한 입장일 때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만, 위·수탁 받은 기관들이다 보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더불어 집행체계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애매함이 지속되다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도 불분명 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과정이 가장 절실해 보이는 시기이다.

4. 서울시-자치구-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노동관련 과와 보건소 담당자들을 한 번씩 보기는 했으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관 따로 민 따로 인 지역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자치구, 민간단체들이 자치구 내에서 취약계층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상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의 협력체계 속에서 자치구까지 확산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별 노동사업 거점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현재 민간단체가 있는 자치구들도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자치구에 있는 노동관련 과들은 이제야 자치구별 현황파악을 시작했고, 회의체계 자체도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 공동사업은 현재 지역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노동사업의 거점기반이 불안정한 곳들은 서로넷 등 네트워크와 정당 및 양대 노총 노동조합 단위들과의 공동사업 속에서 일정한 주체들을 형성하면서 지역별 노동사업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안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토론문 4]

토론문

김미영(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1. 법률사업의 목적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동의함.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구제지원사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노원노동복지센터의 경우 2012년 6월 개소한 이래, 2013년 1,234건, 2014년 1,494건, 2015년 1,904건, 2016년 2,163건, 2017년 11월 현재 1,836건의 상담을 진행해왔음.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법률권리구제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진정 지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따른 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 산재사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등 사건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음. 노동청에 진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동석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은 불가능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장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음.

   - 그런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권리구제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노원노동센터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6년에 30건, 2017년 52건의 법률구제지원을 통해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었음.

   - 권리구제지원의 결과가 절반 이상이 합의되고, 절반정도가 인정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임. 취약계층 노동자 특히나 60대 이상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임금 청구나 최저임금 위반 등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한 후에 혼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경우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 그런데 권리구제지원 제도를 통해 무료로 노무사를 지원한다고 설명을 하면, 용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게 됨. 비록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전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일부의 권리라도 구제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2016년, 2017년 권리구제지원 결과를 보면 불인정 건이 약 7.27%임. 불인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혼자서는 해볼 엄두도 못냈던 사건을 지원을 받아 문제제기 해보고, 불인정되면 그것에 대해 차라리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2. 다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짐.

-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했던 산재 사건 중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권리구제 시 자격기준이 '월평균임금 250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한 명의 노동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이 노동자가 임금이 250만원 이상 이었는데 뇌간출혈으로 사망함. 가장이었던 노동자가 사망하여 이 가정은 차상위 계층이 되었음. 그런데 권리구제지원 사업의 기준이 노동자 월 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대상이 되다보니, 권리구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노동자가 '뇌간출혈'로 사망한 사건이고 가족이 산재 신청하여 재심사까지 진행했으나 불승인. 이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데 사망한 노동자 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 이었고, 차상위 계층에 속해있어서 소송지원을 못했었음. 가족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결국 행정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이처럼 노동자가 월 250만원 이상 이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초생활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권리구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대리인에 대한 선임비용도 조정이 필요해 보임. 현재 진정, 구제신청, 청구, 심사, 재심사, 기타 행정심판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5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산재 사건에서 사망사건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를 따졌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많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권리구제 시 50만원의 노무사 비용은 너무 적다고 생각됨. 산재사건의 경우 단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 등과 구분하여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선임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청소년 알바의 경우, 일정비용(예: 100만원 이하) 이하의 임금체불은 서울노동

권익센터의 법률구제지원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를 통해 노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사건 지원을 했었음(서울시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임금체불 대응사업). 그런데 그 경우 노무사 선임비용 15만원도 너무 적었을 뿐 아니라, 그 마저도 선임비용을 너무 늦게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음.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했던 권리구제지원 사업에 비해 체계성이 떨어졌음.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단순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각 자치구센터에서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노동상담 DB를 개발하여 사례를 축적하고, 통계를 내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의 경향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각 자치구센터가 단순히 권리구제지원사업만 신청하고, 신청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상담 DB를 통해 권리구제지원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음. 결과를 확인하여 내방했던 상담자들과 좀 더 면밀히 소통하는 것이 가능함.

6. 2단계 법률사업 방향과 관련하여, 예방적 권리보호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임.

- 현재 옴브즈만 제도나 마을노무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출자 등을 했던 공공기관 또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예를 들면, 중소영세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옴브즈만이나 마을노무사가 지적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노무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임금설계를 다시 한다던지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개악하는 경우들이 있음.

- 옴브즈만이나 마을 노무사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하자고 해도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실제 있다고 함. 그 사업장의 문제점이 확인 되었을 경우, 단순히 사업주로부터 개선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만 확인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노동법 교육할 시간을 부여한다던지 임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그 사업장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을 것임.

- 노원노동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사업초반 중소영세사업주에게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계획하고 실제 진행한 사례도 있음. 사업주 교육은 요양센터장들에게 한차례 진행하였음. 중소영세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사업주들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함. 노원노동복지센터가 구청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들이 5분~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리찾기 수첩만을 배포하였음.

- 사업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임.

7. 2단계 법률사업 방향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도 민주노총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각 자치구 센터에서 상담하는 실무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인 경우가 허다함.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으면서도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이 불안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후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음.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그런데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법률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장 문제가 단순히 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주어 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미조직팀) 등 노동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

8. 법률사업에서 드러난 이슈를 제도개선을 위해 의제화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보임.

-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각 자치구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아파트 경비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고용불안 문제, 무급휴게시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하고 이슈화 해왔음. 노원노동복지센터의 경우 매년 간단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임금 변동, 고용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음.

-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구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슈화를 시킴.

- 이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업종의 경우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 또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을 감원하겠다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정부의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감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단초가 생겼음.

[토론문 5]

토론문

성근제(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채 3년이 안 되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서울 지역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및 광역노동허브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3년간 법률지원과 교육홍보, 그리고 정책개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육홍보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의 노동 상담소나 노동운동 조직과 일정하게 차별화된 독자적인 활동의 모델과 영역 개척의 가능성을 제시해 내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은 전체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해 주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활동 영역 가운데 교육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면, 노동교육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눈에 띈다.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성과도 의미 있는 결실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400명이 넘는 강사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낸 성과는 이후 권익센터가 내실 있는 노동허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동인권교육과 소규모 참여형 수업이라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노동현실과 세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도 있었다.

주기적으로 시장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시정의 방향이 뒤바뀌면 시의 지원체계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염려되는 바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민관협력 모델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은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 사업이 서울시의 지원과 협력 체계 하에 있다는 바로 그 이유가 이 사업의 일정한 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의식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보고서는 사업의 전체 과정과 전망을 철저히 관료적인 언어와 형식으로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토론자는 이 권익센터 사업의 성과의 의의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의 사업이 이 보고서가 재현해 내고 있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순탄한 길을 거쳐 왔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수많은 활동가들의 고민과 고통, 갈등과 논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 갈등과 회의, 고민과 방황의 시점들을 반추해내지 않는 사업의 총괄과 성과의 나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토론자는 권익센터의 활동가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직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취업 현실과 노동문제, (대)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학생들과 이러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마다 마치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혹은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때문에 토론자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권익센터의 사업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능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권익센터의 활동가 여러분들로부터 청년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 경험과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들을 빌리고 싶을 따름이다. 도대체 오늘날과 같이 자유주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난마처럼 뒤얽힌 시대에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 경쟁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의 가치와 행동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자는 분명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토론자의 이 혼란과 곤혹이 이 보고서의 행간에 묻혀 있을 활동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조금이라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현장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싶은 것이다.

사실 노동권익센터에 청년을 위한 노동법 강좌와 노동인문학 등의 강좌 개설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 역시 토론자가 대학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곤혹과 무관치 않았다. 청년유니온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렇게 몇 번의 강좌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뒷이야기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문의해 오는 학생들도 주변에 꽤 많았다. 그러나 정작 강좌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그 관심과 반응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관심과 실제 참여가 보여주는 격차 사이에 바로 오늘날의 예비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아니 그것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훨씬 더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의식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관심을 보이지만 강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미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동인권 의식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리라는 현실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노동법 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정말로 무의미한 일이라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현실적인 냉담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관심들에 주목하고 이 지점을 파고들기 위한 더 공격적인 교육 기획과 홍보 기획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는 평생

교육원을 통해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강좌의 기획, 홍보, 진행을 거치면서 토론자는 어쩌면 이 강좌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교내 기구를 거치지 않고 총학생회와 직접 결합하는 형식으로 개설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 굳이 교외에서 하는 '알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학생들은 교내에서 '근로 장학'이라는 형식으로, '조교'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학내 노동의 현실들을 주제로 토론과 학습의 공간을 열 수 있다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과 체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제도적 언어의 껍데기를 벗겨 노동 현실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동인문학의 과제가 아닐까? 권익센터가 만약 이러한 실험을 한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러한 실험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일까, 부적절한 공간일까? 논의의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

MEMO

MEMO

MEMO

MEMO